##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037

발의연월일: 2022. 11. 1.

발 의 자:김민기·강훈식·민병덕

박성준 · 송기헌 · 인재근

임종성・장철민・허 영

허종식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(2022. 1. 13. 시행)에 따라 대 안교육기관이 '학교'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,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는 취학유예가 가능해지는 등 대안교육기 관이 공식적인 교육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음.

그런데 대안교육기관이 유치원, 초등학교, 학원 등과 마찬가지로 어린이가 상시적으로 드나드는 시설로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높은 시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「도로교통법」 상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장소에는 반영되지 않아 해당 시설을이용하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이 적절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지적이 있음.

이에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중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으

로써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1항제4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###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가 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대안교육기관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	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
및 관리) ① 시장등은 교통사	및 관리) ①
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	
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	
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	
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	
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	
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	
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	
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	
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4의2.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
	법률」 제2조에 따른 대안교
	육기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
	으로 정하는 대안교육기관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